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허민숙(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18. 9. 2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8. 1. 4.
초고 작성기간	2018. 3. 2. ~ 2018. 5. 31.
초안 검토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8년 8월 7일(화) 오후 3시 - 실무위원: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준 사회문화조사 심의관,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김유향 과학방송팀장, 유의정 교육문화팀장, 조승래 환경노동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서정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 2. 요청일: 2018. 7. 30. 3. 답변일: 2018. 8. 14.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8년 8월 30일(목) 16시30분 - 위원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 박태형 기획관리관

요 약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청소년인 보호종료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초기 성인기(young adult)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일정 연령 이후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사회는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유, 자기성찰, 도전, 자기탐색을 위한 시간과 기회 없이 성인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이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정서적 혼란과 부담이 작지 않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매해 평균 2천여 명을 넘고 있고, 청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더 어려워진 사회환경 속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 역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제도를 살피고, 이들에 대한 가장 선진적인 정책의 사례로써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및 연장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은 다각적이고 연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립정착금의 지급, 교육, 주거 및 취업 등의 지원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립정착금 액수의 편차가 있고, 정부의 LH주거지원을 받는 보호종료 청소년은 25%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 취업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진학율이 또래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고,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취업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취업한 보호종료 청소년의 56%가 판매직

또는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보호기간 연장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며, 특히 주거안정을 교육, 훈련 및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자립지원 정책으로 삼아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상담사 지정 등 지속적 연계와 신뢰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자립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면도 확인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도 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관 설치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는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가 존재하기 보다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즉시 성인이 되도록 재촉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 4

- 1. 보호대상 아동 현황 4
- 2.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7

III.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문제점 / 14

- 1.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 14
- 2.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현황과 문제점 27

IV. 해외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 / 36

- 1. 개요 36
- 2. 영국 37
- 3. 미국 49
- 4. 시사점 58

V.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 62

- 1. 보호기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62
- 2. 자립지원의 표준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 64
- 3. LH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비 지원 67

4. 학업지속 지원의 확충	68
5.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9
6. 건강보험지원 프로그램 마련	69
7.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청소년 참여보장	70

VI. 결론 / 72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4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5
[표 3] 보호조치 현황	6
[표 4]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청소년 수	7
[표 5]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	19
[표 6]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예산	19
[표 7]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20
[표 8]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27
[표 9]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대학진학 현황	29
[표10] 2017년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현황	29
[표11] 2017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청소년 주거현황	31
[표12]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취업현황	32
[표13]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 국가별 요약	60

그림 차례

[그림 1] 2017년 보호종료 사유	8
[그림 2] 등록금 마련방법	9
[그림 3] 취업자의 직업 유형	10
[그림 4] 주거현황	11
[그림 5] 지난 1년 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나 치료받지 못한 이유	12
[그림 6] 디딤씨앗통장 지원현황	28

I. 서론

- 이 글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되다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청소년을 가리킴¹⁾
 - 최근 수년간 매년 2천명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종료되고 있음
 - 예컨대 2017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퇴소한 청소년은 2,593명임
 -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 조치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됨
 - 부모 등 가족의 보호 하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만 18세를 전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
 - 그런데 보호종료 청소년은 그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자립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됨
 - 보호종료 청소년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 또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²⁾
- 1)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아동복지법」 등 법률 등에서 통상적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절한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들을 보호종료 청소년(young people leaving care)이라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보호종료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함

-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성
 -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빈곤, 낮은 생활수준, 주거 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
 - 가족·친구·친지 등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에 따른 고립
 - 정서적 지원과 애착형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의존심리, 정신적 위기 등
 -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
 - ‘정상가정’ 출신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십대 미혼부모가 될 가능성
-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빈약한 상황임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예산이 2018년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도 빈약한 편임
 -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대변해주는 단체 등도 없어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임
 - 드물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일단이 알려지고 있음³⁾

2) Mynarska et al., “Vulnerabil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Major risks,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amilies And Societies Working Paper Series*, 49, p.9, 2015.

- 따라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자립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아동기에 절실히 필요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이들 보호종료 청소년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안착하게 돕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방치의 결과로 이들이 홈리스, 십대 미혼부모, 빈곤, 범죄연루, 불안정 고용,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등을 겪게 된다면, 일종의 악순환을 낳아 결국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것임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입법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합뉴스, 「다 컸으니 나가라고요?…보육원 퇴소청소년 눈물」, 2017년12월8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166700797.HTML>(검색일: 2018.3.2.), 한국일보, 「보육원 퇴소 후 거리로 내몰리는 ‘보호종료자」, 2017년10월11일자, <http://www.hankookilbo.com/v/029861a88ab844ae8f970d2d0f23fc2c>(검색일: 2018.3.2.)

II.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1. 보호대상 아동 현황

가. 보호아동 수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총 281개소, 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29,343명임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종합시설임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표 1]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단위: 명)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종합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4년	31,603	13,437	336	481	124	252	2,588	14,385
2015년	30,365	12,821	350	447	140	243	2,636	13,728
2016년	29,343	12,448	356	485	170	230	2,758	12,896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2)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및 보호조치 현황

- 2017년 기준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4,121명임
- 보호조치 아동 발생 사유 중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미혼부모 및 혼외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유형계	6,020	4,994	4,503	4,592	4,121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⁴⁾	3,668	2,965	2,866	3,148	2,769
미혼부모, 혼외자	1,534	1,226	930	856	850
비행, 가출, 부랑	512	508	360	314	229
유기	285	282	321	234	261
미아	21	13	26	10	12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7.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가장 많은 보호조치 유형은 시설보호임
- 2017년 기준, 보호대상 발생 아동 중 약 59%가 시설보호 조치되었으며, 가

4) 그 외 사유로는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이 있음.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125.60.43.169/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vw_cd=MT_ZTITLE&list_id=D3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18.5.19.)

정위탁 조치는 34%에 이릅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입양 및 가정위탁보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⁵⁾
- 향후 아동보호정책 방향은 외국의 사례처럼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표 3]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호유형 계	6,020	4,994	4,503	4,592	4,121
시설보호	3,257	2,900	2,682	2,894	2,421
가정위탁	2,265	1,688	1,582	1,449	1,413
입양	478	393	239	243	285
소년소녀가정	20	13	0	6	2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7.

5)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검색일:
 2018.5.19.)

2.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가. 보호종료 청소년 수

- 2017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 수는 총 2,593명임
-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2,470명의 청소년이 만기 혹은 연장을 사유로 보호종료되어 자립하였음

[표 4]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청소년 수

(단위: 명)

년도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2013년	2,207	1,065	679	386	85	51	34	1,057*	-	-
2014년	2,172	1,008	635	373	82	47	35	1,082*	-	-
2015년	2,677	980	578	402	140	85	55	1,557	793	764
2016년	2,703	1,042	673	369	139	74	65	1,522	696	826
2017년	2,593	1,034	687	347	153	108	45	1,406	652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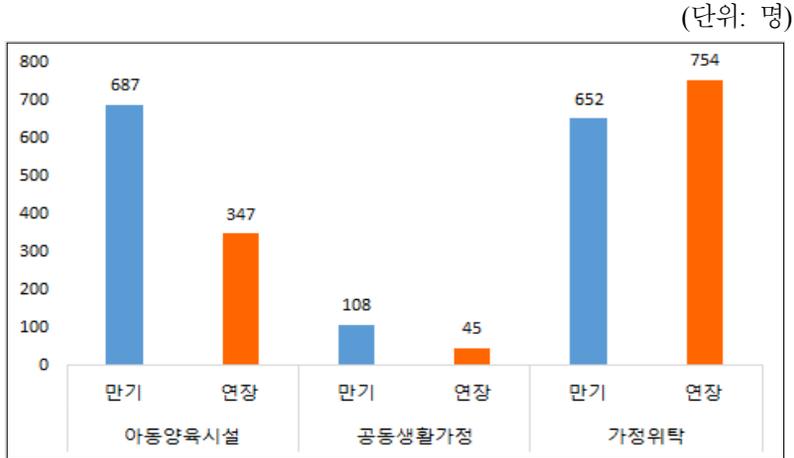
주: * 만기·연장종료 구분 불가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현황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17년부터 수집함에 따라, ‘13~16년 현황의 경우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만기 퇴소한 경우가 연장퇴소보다 더 많으며, 가정위탁은 연장퇴소 청소년의 수가 더 많음

[그림 1] 2017년 보호종료사유



나. 교육 및 취업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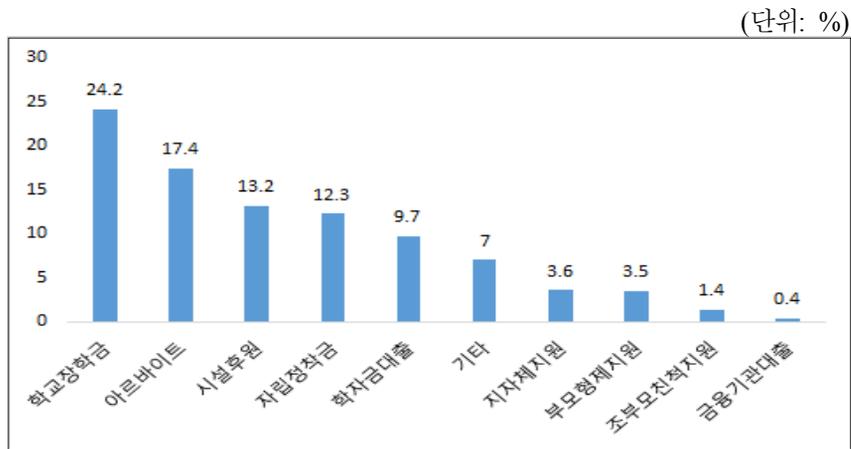
-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이하 『2016년 실태조사』) 6)에 따르면, 보호종료 청소년 중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2%, 없는 경우는 42.8%임
 -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이 59.8%로 대학진학율이 가장 높고, 아동양육시설 57.7%, 가정위탁 48.2% 순임7)
- 대학재학 중 등록금 마련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6.2%가

- 6) 2008년, 2012년에 이은 세 번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12,844명 중 1,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데, 전체 대상 중 9.5%의 유효 데이터 답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태파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은 본 보고서 65~66쪽에 기술하였음
- 7) 각주 6)에서의 설명과 같이 5년 이내 보호종료 청소년 12,844명 중 9.5%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의 응답결과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 29쪽의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진학현황」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2016년 실태조사』에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음

- 그 외 학교장학금(24.2%), 아르바이트(17.4%), 시설후원(13.2), 자립정착금(12.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9.7%), 기타(7.0%), 지방자치단체 지원(3.6%), 부모/형제지원(3.5%), 조부모/친인척 지원(1.4%), 금융기관대출(0.4%)임

[그림 2] 등록금 마련방법 (중복응답)



- 대학재학 중 생활비 마련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5.2%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함
- 취업준비중이라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및 어학공부(26.4%), 구직정보 탐색(19.8%), 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18.2%), 기타(14.7%), 직업훈련(9.5%)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준비하지 않은 경우는 8.5%에 이룸

다. 취업 및 경제상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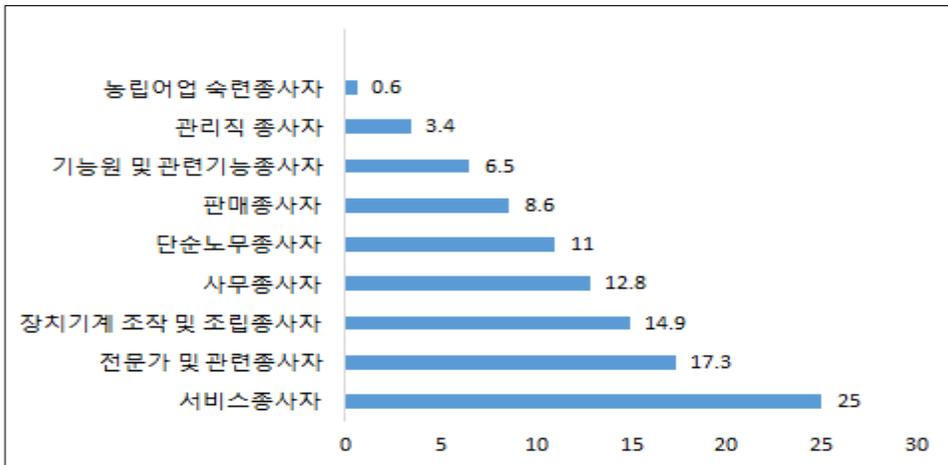
- 『2016년 실태조사』 응답자 중 51.1%는 취업 중이었으며, 48.9%는 취업

준비 중이라 답함

- 취업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21.6개월이었고, 지난 2012년 조사에 비해 구직활동 기간이 2.4배 정도 증가하였음
- 취업 중인 응답자들의 직업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서비스종사자(25%)이었으며, 그 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4.9%), 사무종사자(12.8%), 단순노무종사자(11.0%), 판매종사자(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6.5%), 관리직 종사자(3.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0.6%) 순 임

[그림 3] 취업자의 직업 유형

(단위: %)



-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72.7%, 비정규직 27.3% 였음
- 취업자의 88.9%는 임금근로자이고, 비임금근로자는 11.1%임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8%는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정규 또는 계약직), 13.1%가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3.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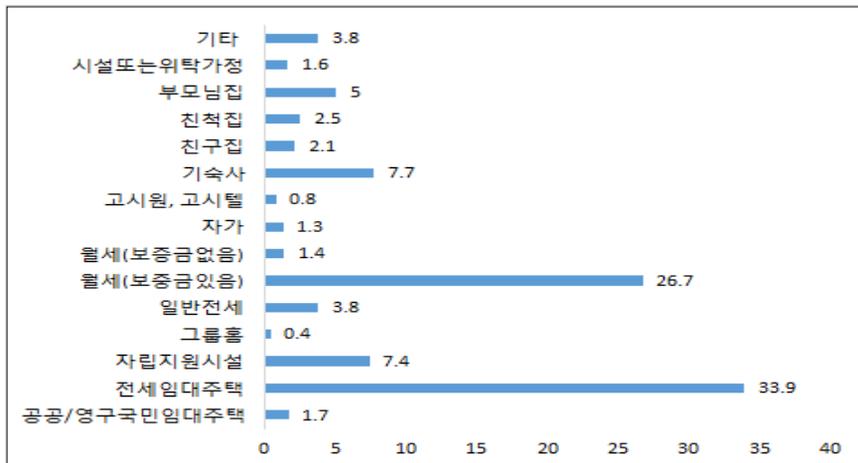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연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으로 연평균 1,483만원, 월평균 123만원의 소득을 올려 평균소득이 최저임금(2016년 월 1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월평균 지출액은 138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현재 수급자인 경우는 28.2%이고, 퇴소 이후 수급을 경험한 비율은 30.4%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조사에 비해 수급경험 비율이 8.2% 높아짐

라. 주거 현황

-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세임대주택(33.9%), 월세(28.1%), 자립지원시설(7.4%)순임

[그림 4] 주거현황

(단위: %)



- 지난 2012년 조사 당시 월세(24.5%), 자립지원시설(18.6%), 정부지원 전세주택(16.4%), 학교 또는 회사 기숙사(14.4%)와 비교해 볼 때, 정부지원 전세임

대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월세의 비중도 더 늘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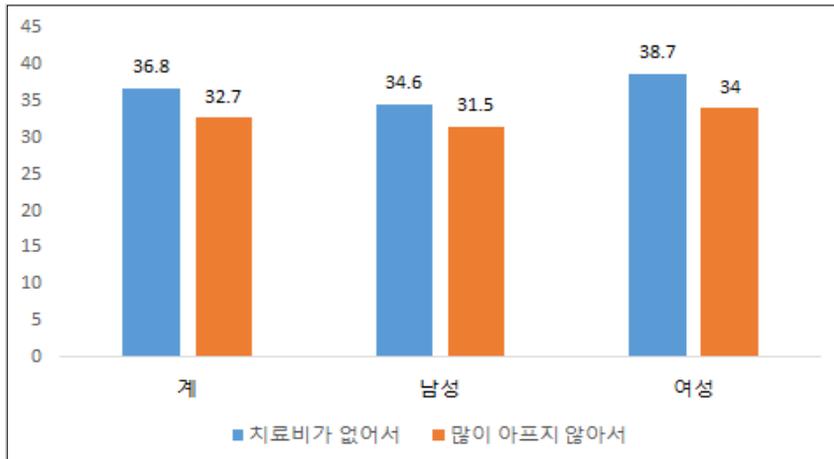
- 보호종료 직후와 조사시점에서의 주거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호종료 직후에는 월세의 비율이 20.8%로 가장 높았으나, 조사시점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 33.9%로 가장 높았음

마. 건강 및 사회심리적 현황

- 조사대상자의 85.9%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14.1%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았으나 치료받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그림 5] 지난 1년 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나 치료받지 못한 이유

(단위: %)



- 신체적 질병 외에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행복감과 삶의 질 만족도는 아동

종합실태조사⁸⁾의 결과보다 보호종료청소년이 모두 낮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및 우울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 행복감 조사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평점은 3.03점이었으나, 보호종료청소년의 행복감은 2.53점임
- 보호종료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은 평균 2.88점이었고, 자립 1년차의 경우 2.7점에서 차츰 높아져서 자립5년차의 경우 2.95점에 이름

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현황

- 조사대상자의 72.5%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임
-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고, 현재는 같이 살지 않지만 앞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경우는 31.1%,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은 27.0%였음
-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48%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함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임

8) 김미숙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p.201, 2013.

Ⅲ.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문제점

1.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

가. 보호종료 조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하여야 함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확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리킴(「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보호조치에는 ①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②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④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⑤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⑥「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관련 조치 등이 있음(「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보호종료조치) 위의 보호조치 유형 중 ③,④,⑤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다만,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②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④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가리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요컨대 ‘보호종료조치’란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만18세)에 도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이들을 보호시설 등으로 부터 퇴소시킴으로써 보호를 종결하는 것을 가리킴
- 다만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보호를 종결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아동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대학교육, 직업훈련, 취업준비 중인 경우) 또는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장애·질병·저지능 등)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 보호대상아동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으로의 이행은 이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의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이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39조)
 - 지원계획에는 ①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②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램 실시, ③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가 포함되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자립지원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①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②자산형성지원, ③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④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⑤기타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①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③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이 포함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①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②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③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임(「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지원 전담기관 및 아동자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0조제1항)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

다. 지원제도

- 사업예산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은 자립지원단 운영지원 예산과 요보호아동 행사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10억 2,100만원 임

[표 5]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20	1,000	1,012	1,02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 2018년 8월 29일 발표된 ‘2019 예산안’에 따르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총 140억6천9백만원의 예산이 신설됨

[표 6]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A)	'19(안) (B)	증감	
			(B-A)	%
생계급여(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3,280	3,280	순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9,858	9,858	순증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931	931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특색사업 100선』, 2018.

- 생계급여 신청자가 30세 미만 보육원 및 그룹홈 등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 하고, 2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의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함
 -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 2년 내 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
 - 편의시설을 갖춘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를 제공함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만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보호아동에 대해 매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함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

호대상 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준비를 돕고,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

- 2018년 기준, 전국 758개의 기관(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 총 252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음⁹⁾

[표 7]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총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계	758	252	264	234	18	18	476	0

자료: 『2018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주: *) 가정위탁: 서울은 중앙과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 *)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에 전담요원이 1명 배치됨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DB에 입력하고 지자체에 보고함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 1회 자립수준 평가, 위기상황 시 기관 연계를 통한 전환지원 등을 제공함

(1)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 시점까지의 자립지원 제도

□ 자립지원계획 수립

- 「아동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9)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18, 2018.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매년 자립지원계획서 작성
- 대학진학지원 방안 수립, 진학 이후 등록금 조달 방안 검토, 취업 희망자의 경우 입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계획 수립
- 보호종료에 대한 심리적 준비, 원가족과의 관계 및 멘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자립지원서비스(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동의 적성 및 욕구과약,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평가 후,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을 연계하여야 함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자립체험관프로그램, 인턴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진로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¹⁰⁾

□ 자립준비도 점검

- 보호종료 2-3개월 전에 보호아동의 보호종료 후 실제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 사례회의나 자문회의를 통해 보호종료 및 연장여부, 사회관리 유형(일반/집중지원) 결정
- 자립준비도 점검척도의 사용

10)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앞의 책, p.25, 2018. 참조

□ 보호종료 점검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 보호종료 1-2개월 전에 보호종료를 점검(연락처, 보호종료 사유, 학력, 경제 상황, 주거형태, 취업 및 진학 상황, 생활비 조달 방안, 직업훈련 관련, 지지 체계, 가족사항 등)하고 퇴소·종결카드를 작성함
-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및 수령절차를 안내함
- 자립정보북 배포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작성함
-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함
 - 일반 사후관리의 경우, 대면,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연락방법을 결정하고, 의식주, 학업/취업,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집중지원 사후관리의 경우, 자립준비도 평가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 제도

(가) 자립정착금, CDA 및 자립수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2005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방정부가 지급함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전 해당 청소년이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이 포함

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아동명의로 계좌로 정
착금이 입금되고 자립업무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이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¹¹⁾

□ 2007년 4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를
도입함

○ 이 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같은 금액(4만원 이내)를 매칭
하여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임¹²⁾

- 대상아동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
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임

-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지원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만 24세까지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함¹³⁾

□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 2년 내 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2018년 8월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98억7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¹⁴⁾

○ 또한 2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의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함(현행

11) 같은 책, p.17, 2018.

12)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s://www.adongcda.or.kr/>)(검색일: 2018. 4. 20.)

13)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47, 2017.

14) 기획재정부, 『특색사업 100선』. p.69, 2018.

40만원+추가30% → 50만원+추가30%)

(나) 입학금 또는 대학생생활안정자금

-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은 성적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 2분위 해당 학생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음
-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생활안정자금이 1회 지원되고 있음
 -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청소년의 대학진학 시 시·도별로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생활안정자금을 1회 지원하고 있음
 - 부산대학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최소 성적 유지 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다) 주거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¹⁵⁾은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2)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지원 3) 영구임대 지원,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5)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6)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 제공 등이 해당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은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을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하며, 20세 이후 이자(연1~2%)를 부담하도록 하며,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 2년 단위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보호종료 청소년 중 만 18세에

15) 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pp.224-227, 2018.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만 23세 이하인 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본인부담금(보증금) 100만원과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내의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함

- 영구임대 지원은 보호종료 청소년 중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가 지원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함
- 공동생활가정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만23세 이하의 자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임대료로 납입하면 되고 입주 인원은 5인 내외임
- 자립지원시설은 만 18~24세 이하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시설 장의 추천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전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30명 내외임
-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 지원은 2018년 8월 28일일 발표된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최장 2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가구 등 생활집기가 비치된 주거형태임

(라) 취업지원

-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적성검사, 기업탐방, 맞춤형알선, 취업상담, 훈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¹⁶⁾이 운영되고 있음

16)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https://www.work.go.kr/pkg/young/index.do> (검색일: 2018.8.7.)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체계임

-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동행면접 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마) 사후관리¹⁷⁾

-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보호종료 후 매년 연중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자립수준평가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종료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자립생활 하는지를 점검해야 함

- 모니터링 과정 중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거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에 기초해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보호종료 이후 건강, 학업, 취업 생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중지원 사후관리로 전환 결정할 수 있음

-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집중지원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보호종료 초기에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간격을 축소해야 함

-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 욕구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17) 아동자립지원단, 앞의 책, pp.32-34, 2018.

2.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현황과 문제점

가. 지원현황

(1) 자립정착금과 CDA

- 2018년 기준, 17개 시·도 대부분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00만원(강원도), 300만원(대전, 대구, 인천)을 지급하는 곳도 있음

[표 8]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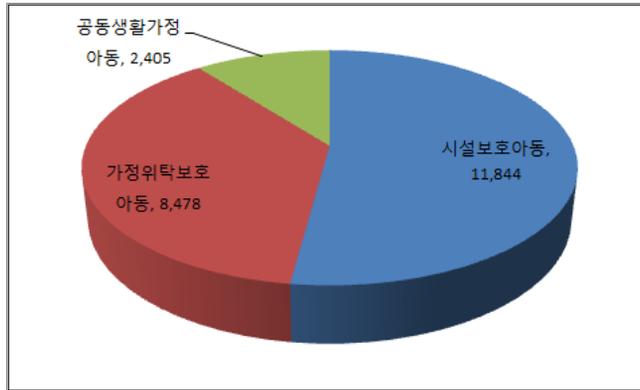
(단위: 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서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부산	400	4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대구	300	300	-	300	300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인천	500	500	100	5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광주	400	400	100	400	400	100	400	4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대전	300	300	300	300	300	-	300	300	-	300	300	300	300	300	300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500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경기	500	500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강원	100	300	-	100	300	300	300	300	-	300	300	300	400	400	400
충북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충남	500	500	-	500	500	-	500	-	-	500	500	500	500	500	500
전북	300	300	-	300	300	-	500	300	-	500	500	500	500	500	500
전남	300	300	-	300	300	-	300	300	-	300	300	100	500	500	400
경북	500	-	-	500	500	-	500	500	-	500	500	300	500	500	300
경남	300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그림 6] 디딤씨앗통장 지원현황

(단위: 명)



자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s://www.adongcda.or.kr/?goPage=107>)

-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양육보호시설의 디딤씨앗통장 평균 수령액은 329만원이고, 공동생활가정에서의 평균 수령액은 335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258만원임¹⁸⁾

(2) 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

- 보호종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은 큰 격차를 보임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호종료 청소년 2,593명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60명, 3년제 이하의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95명으로 대학 진학률은 13.7%이며,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2%에 그치고 있음¹⁹⁾
 - 이는 2017년 기준 고교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68.9%²⁰⁾에 크게 못 미침

18) 앞의 책, p.90.

19) 이 수치는 2017년 한해 보호종료된 청소년의 진학현황으로, 본 보고서 제II장의 『2016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5년 내 전체 보호종료자 중 9.5%가 응답)와 다르기 때문에 진학률의 차이가 발생함. 각주 7번 참조.

20)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표 9]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대학 진학 현황								
				3년제 이하			4년제			미입력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계	288	51	51	155	25	15	111	21	28	22	5	8
남	148	28	19	81	12	5	56	12	8	11	4	6
여	140	23	32	74	13	10	55	9	20	11	1	2

자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 대학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은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표 9]에서와 같이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광주, 충남, 경남)에서부터 500만원 지급하는 곳(울산),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에게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대구, 전남), 공동생활 가정 및 위탁가정 청소년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곳(대전) 등 지역별 편차가 있음

[표 10] 2017년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현황

(단위: 만원)

구분	대학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300	300	300
부산	실비	실비	실비
대구	250	250	200
인천	200	200	200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검색일: 2018.5.18.)

광주	-	-	-
대전	실비	-	-
울산	500	500	500
세종	실비	실비	-
경기	실비	실비	실비
강원	200	200	200
충북	200	200	200
충남	-	-	-
전북	200	-	200
전남	150	150	100
경북	200	200	200
경남	-	-	-
제주	300	300	3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3) 주거지원 현황

- [표 10]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 정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32%이며, LH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25%임
-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개인부담으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는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 진학 및 취업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월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표 11] 2017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청소년 주거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정부지원				개인부담								
		LH 주거 지원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	전세	월세	자가	고 시 원	기 숙 사	친 인 척	귀가	위탁 가정	기타 **
	2,593	649	94	21	71	119	337	43	14	274	215	140	389	227
양육 시설	1,034	320	84	19	28	4	148	2	3	218	36	116	-	56
공동 생활	153	69	8	0	8	3	22	2	0	17	5	13	-	6
가정위탁	1,406	260	2	2	35	112	167	39	11	39	174	11	389	165

자료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주: *) 지자체 연계 시설 입소(예: 장애인 시설, 청소년 쉼터) 등

**) 지인집, 민간후원 주거마련 등

(4) 취업지원 현황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중 38.8%가 취업하였고, 취업한 이들의 56%가 서비스 판매직 또는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함

취업성공패키지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고졸학력이 대다수인 보호종료 청소년에게는 자립을 위한 중, 장기적 훈련을 통한 기술 연마 등의 취업훈련 지원이 필요한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취업연계에 그치고 있어 보호종료 청소년의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전언임²¹⁾

-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취업 욕구와 현실적 간극이 큰 것으로 보임
 - 보호종료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진로 지도가 종국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하나,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실습비 및 장기간의 교육·훈련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자격취득 및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임

[표 12]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계	사무 관리직	전문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기계조작 등 단순노무	기타
아동 양육 시설	계	562	65	98	167	95	159	27
	남	364	20	45	91	64	127	17
	여	248	45	53	76	31	32	11
공동 생활 가정	계	72	6	13	23	15	12	3
	남	42	2	6	10	11	10	3
	여	30	4	7	13	4	2	0
가정 위탁	계	372	46	68	126	20	76	36
	남	167	13	14	45	18	58	19
	여	205	33	54	81	2	18	1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21)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아동자립지원단장과의 전화면담(2018.5.30.)내용에 근거함.

2. 문제점

가. 자립정착금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수령시기도 달라 자립지원 제도의 충실한 이행 및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지원, 정보 전달의 문제가 있음²²⁾

나.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의 확대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학업집중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고, 진학이후 졸업까지 학업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함
- 교육기회의 확대가 여러 사회적 격차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의 진학 및 학업지속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주거지원

- 정부의 주거지원 수혜율이 32%로 낮고 연령기준이 적용되며, 임대료 및 이자 지불 능력이 있는 취업 중 보호종료 청소년을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 등 더 열악한 상황의 보호종료 청소년

22) 보건복지부,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91, 2017에 따르면, 자립지원금을 보호종료 전 및 보호종료 후 1개월 이내 수령한 비율이 63.4%,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 14.9%, 6개월 이내 11.9%, 1년 이내 5.4%, 보호종료 후 1년 이상도 4.5%에 이룸

년이 오히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라. 취업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직이 높으며, 연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데다, 지출이 소득보다 큰 상황이므로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 그 외 사항

-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준비기간 및 부모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호대상 청소년의 경우 18세로 보호 종결되며, 연장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본인의 필요 및 요청만으로 보호기간이 연장 되지 않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음
- 부모로부터의 자립시기가 유예 가능한 일반 또래 청소년에 비해 보호종료 청소년은 시설퇴소 또는 위탁종결로 자립시기가 강제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 중, 지정된 시설 및 기관에서 교육·훈련 중이거나, 질병 및 장애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보호종료 청소년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퇴소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수급자

가 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²³⁾은 이들에 대한 주거, 교육 및 취업지원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²⁴⁾로, 2016년 기준 20~24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율이 2.12%²⁵⁾인 것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임

23)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p.121-122, 2017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재 수급비율이 높았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퇴소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졌음.

24) 앞의 책, p.122.

25) 2016년 국내 20~24세 연령 총인구는 3,400,634명이고, 동연령 기초생활수급자는 72,059명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603&vw_cd=MT_ZTITLE&list_id=A11_2016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18.6.27.)

IV. 해외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

1. 개요

- 영국과 미국은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
- 미국은 1999년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에 근거해 양육 및 위탁시설 수용 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CFCIP)을 설계하고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영국은 2000년 「보호종료법」(Leaving Care Act) 제정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의무화하고,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평가하여 그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나, 더 나쁜 경우 사법시스템의 제재 하에 놓인다는 점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자립의 시점으로 규정하여 자립의 책임과 의무를 보호대상 아동에게 부과하기보다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점진적 이행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의무로 보고 있음

2. 영국

가. ‘머무르기’와 ‘곁에두기’

- 영국은 ‘머무르기(Staying Put)’와 ‘곁에두기(Staying Close)’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²⁶⁾
- 2014년 「아동과 가족법」(The 2014 Children & Families Act)에 의해 각 지방정부는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머무르기(Staying Put)’ 정책 시행을 의무화 함
 - 18세에 도래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21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요청 및 필요에 의해 자신이 성장한 동일 보호시설 및 기관에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
- 곁에두기(Staying Close)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을 떠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되, 그들이 머물던 보호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임
 - 성인기로의 갑작스러운 이행을 재촉하기보다는 독립으로의 점차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마치 부모님 집처럼 자주 방문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나. 개인상담사 지정 제도

- 영국은 2000년 「보호종료법」(Leaving Care Act)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요구를 평가 반영하도록 하고, 개인상담사(personal

26) HM Government, *Keep on Caring: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Care to Independence*, pp.37-38, 2016.

advisor) 지정 제도를 운영함

- 「보호종료법」에 따라 개인상담사를 지정해 보호대상 청소년이 18세에 이르기까지, 재학 중인 경우라면 21세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연령을 상향 조정함
- 2008년도 「아동 및 청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제정을 통해 재학 중인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사 지정을 21세로 연장하였으며, 재학 중인 경우 그 서비스를 25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7년도에는 「아동 및 사회복지법 2017」(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에 의거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지정해주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연령을 연장함²⁷⁾
 - 2018년 4월1일부터 모든 보호종료 청소년은 25세에 이르기까지 개인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²⁸⁾
 - 개인상담사 지정의 궁극적 목적은 보호종료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있음
 - 개인상담사는 청소년이 보호종료 시점에서 성인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
 - 지원형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형성시켜주는 방식일 수도 있음

27) House of Commons Library, *Foster care in England, Debate Pack(CDP-0064)*, p. 16, 12 March, 2018.

28) 영국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가 보호종료 청소년 상담사 지정과 관련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발간함. Department of Education, *Extending Personal Adviser support to all care leavers to age 25: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p.7, Feb 2018.

- 지정된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향후 진로 계획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제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음

다. 주거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주거정책은 핵심 자립정책으로 간주됨
 - 보호종료 청소년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단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고용 및 훈련의 지속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수급권자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²⁹⁾
- 「아동 (위탁보호) 법」 (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법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regulations and guidance)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³⁰⁾
 -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거처와 응급상황을 위한 시설 관련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함
 -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국과 주택사업국이 서로 협력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주거방안을 수립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충분히 고지

29) Barnardo's and St. Basils, *Care Leavers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 p.25, 2015.

30) 주거정책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가능 함.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3: planning transition to adulthood for care leavers*, pp.63-75, 2015.

하고, 개인 임대업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할 경우 보증금 등 자산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함

- 18세에 이르게 된 보호종료 청소년은 개인상담사의 도움과 안내로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지를 찾는 지원을 받음
 -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음³¹⁾
 - 충분한 주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당사자들과 함께 주거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주거위험을 감소시키기→필요에 따른 주거와 지원에 접근하기→장기적 정착지 찾기
- 2002년 제정된 「노숙인 보호법」(Homelessness Act)은 취약계층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보호종료 청소년은 가장 주요한 정책대상 중 하나임

라. 교육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은 장학기금(Bursary Fund)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됨
 - 장학기금은 16-19세에 속하는 청소년의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university)이 아닌 영국 내 공립학교나 전문대학(college)에서 공부하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자가 대상이 됨³²⁾
 - 해당 연령 청소년이 보호종료 청소년인 경우 우선 고려대상이 됨
 - 교육과정에 있는 동안, 의류비, 도서구입비, 학업과정에서 필요한 도구, 여비 및 점심 식대 등의 사용 용도로 연간 £1,200(한화 약 180만원)이

31) Barnardo's and St. Basils, 앞의 책, pp.6-7, 2015.

32) UK Government, "Bursary Fund", <https://www.gov.uk/1619-bursary-fund>(검색일: 2018.4.23.)

지원됨

- 보호종료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지방정부 당국은 £2,000(한화 약 289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19세 이상인 경우 자유재량기금(discretionary bursary)에 지원할 수 있음
 - ◆ 교육기관(education institution)이 개별 학생의 필요(교통비, 식대, 교재비, 장비 등)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³³⁾

□ 고용연계 학습 기회를 지원함

- 영국 중앙부처인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학습 및 고용기관 (Learning & Work Institute)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이 고용과 견습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음³⁴⁾
- 기업혁신기술부는 보호종료 청소년 및 개인상담사가 함께 진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정보와 직업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 및 실제 고용 및 실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주와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함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수혜 기회를 지원함

-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지원하도록 유도함

33) UK Government, “Advice for young people: 16 to 19 Bursary Fund guide”, <https://www.gov.uk/guidance/advice-for-young-people-16-to-19-bursary-fund-guide#finding-out-if-you-are-eligible-for-the-discretionary-bursary>(검색일: 2017.7.26.)

34) HM Government, 앞의 책, p.33, 2016.

- 고등교육기관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지원부(Office for Student)³⁵⁾의 장(director)에 의해 승인된 접근협정(access agreement)을 제출해야 함
- 접근협정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소수집단(under-represented backgrounds)인 학생그룹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데, 이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수혜에 기여하고 있음³⁶⁾
 - ◆ 접근협정의 내용에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80%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및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있음³⁷⁾
- 고등교육 통계기관(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ESA)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통계자료 생산 및 분석 과정에서 식별하여 연구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 학생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³⁸⁾
- 접근협정 등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35) 공정기회 사무국(Office for Fair Access: OFFA)의 명칭이 2018년 4월 1일자로 변경됨 <https://www.offa.org.uk/>(검색일: 2018.4.24.)

36) OFFA, “How to prepare and submit your access agreement: step by step guide” <https://www.offa.org.uk/universities-and-colleges/prepare-submit-access-agreement-step-step-guide/>(검색일: 2018.4.24.)

37) HM Government, 앞의 책, p.34, 2016.

38) 같은 책

마. 취업지원

□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운영함

-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인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산하기관인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³⁹⁾는 실직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실업수당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임
 - 실업자의 구직을 돕고, 고용주의 구인을 알선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2017년 4월에 소개된 Youth Obligation은 청년 실업해소 프로그램으로 18-21세 청소년은 반드시 학업과정에 있거나 고용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 하에 도입됨
 - 18-21세의 실업 청소년 중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에 신청하는 자가 대상이 됨
 - 유니버설 크레딧은 기존 6개의 기초보장 제도(소득보조, 소득 기반 구직자 수당, 소득연계고용지원수당, 주거급여,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를 통합하여 단일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됨⁴⁰⁾
 - 신청자는 3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게 되는데, 구직 방법 및 면접기술, 체계적인 취업준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견습직 등 실제 취업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격려됨
 - 훈련 후 6개월 이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했거나,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의무 실무 연수(mandatory work placement)과정에 배치됨⁴¹⁾

39) UK Government, “Jobcentre Plus”

<https://www.gov.uk/jobcentre-plus-help-for-recruiters>(검색일: 2018.5.31.)

40) 이현주, 「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 유니버설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보건복지포럼』, 통권 226호, 2015.8.

41) HM Government, 앞의 책, 2016, p.35.

- 청소년 참여 지원(Youth Engagement Fund: YEF)⁴²⁾
 - 2015년 4월에 도입된 YEF는 14-17세 청소년들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YEF 지원사업 대상의 절반가량은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가 임박한 청소년임
 - 대상 청소년들이 반드시 학업 혹은 고용 상태에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제도에의 장기적 의존 상태와 범죄 연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교육과정이나 고용 또는 훈련 과정에 있다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⁴³⁾
- 취업지원 시 면접에 필요한 의류비용을 지급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⁴⁴⁾

바. 건강지원

- 영국정부는 2016년 이래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청소년 건강문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은 주요 지원 대상임⁴⁵⁾

42) 같은 책, p.36.

43) HM Government, 앞의 책, p.47, 2016.

44) 같은 책, p.47.

45)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2016년 7월 착수한 전문가 실무그룹(Expert Working Group)은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NHS England), 영국보건교육(Health Education England), 민간 파트너(sector partner)가 결합한 전문가 그룹으로 그 결과 보고서를 2017년 11월에 발표함. 구체적 내용은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Improving Mental Health Support for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7을 참고할 것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⁴⁶⁾
 - 2015년 10월 지방정부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전환 계획(Local Transformation Plans)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방안,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함
- 보호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수혜가 가능함⁴⁷⁾
 - 영국 셰필드 지역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정신간호사(communitary psychiatric nurse)와의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버밍엄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25세까지 지원해 줌
 - 보호종료 여성 청소년인 경우, 보호시설을 떠난 뒤 18~24개월 내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2010년 5월 이래 건강방문상담사(health visitors)를 50% 증원하고, 특히 보호대상 아동이었던 10대 엄마들을 위한 방문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

46) HM Government, 앞의 책, p.44, 2016.

47) 같은 책, pp.45-6, 2016.

사. 보호시설 평가와 청소년 참여보장

(1) 성취보고 및 시설평가

- 교육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보호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음⁴⁸⁾
 - 보호아동(looked-after child)은 12개월 이상 지속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보고서는 주로 학업성취에 있어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음
 - 2018년에 출간된 보고서(Outcomes For Children Looked After by LAs: 31 March 2017)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보호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비보호아동에 비해 전 영역(읽기 및 쓰기, 수학, 과학)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을 평가 및 관리·감독함
 - 「교육 및 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EIA)은 아동 복지시설에 관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 아동서비스 및 훈련 표준화를 위한 평가·관리·감독 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는 아동 복지시설 및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평가함⁴⁹⁾

48) 보호아동의 성과에 관한 연례보고가 영국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UK Government, “Statistics: looked-after children”,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atistics-looked-after-children#outcomes-for-looked-after-children>(검색일: 2018.5.11.)

49) Ofsted, “Children’s social care data in England 2017: main finding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rens-social-care-data-in-england-2017>

- 2017년 3월 31일 기준, 2,145개의 아동복지시설(children's homes) 중 2,018개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조사(full inspection)가 실시됨
- 그 중 368(18.2%)개 시설이 탁월(Outstanding) 평가를 받았고, 1,278개 시설(63.3%)은 양호(Good) 판정을 받았으며, 348개 시설(17.2%)은 개선이 필요함(Requires improvement to be good/adequate/satisfactory)을, 24개 시설(1.2%)은 부적합(inadequate) 판정을 받음
- 현장조사 완료 후, 3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2013년부터 Ofsted의 감독·평가 범위가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까지 확대됨⁵⁰⁾
 - 2013년~2015년 기간의 평가 결과 59개의 대상 중 36%가 탁월 및 우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51%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그리고 13%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음
 - 개선 필요 및 부적합 판정은 주로 보호아동에게 해당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거나, 개인상담사 지원이 부족한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내려짐

(2) 참여보장

- 영국 교육부 보고서⁵¹⁾는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는 아동담당관실(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의 설문조사

[7/childrens-social-care-data-in-england-2017-main-findings#all-childrens-homes](#)

<검색일: 2018.5.11.>

50) Department for Education, *Care Leavers' Transition to Adulthood*, Session 2015-16, pp.33-4, July 2015.

51) 같은 책, p.40, 2015.

(Care Monitor Survey)를 통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정부와 단체 등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이후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됨

- 보호종료 후 자살하는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병원입원 비율, 10대 임신과 관련한 정보 등이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로 예시됨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 보호종료 자문그룹(national care leaver advisory group)을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자문그룹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⁵²⁾

52) Wharton, Rachel, Plum Lomax and Rosanna Thomasoo, *In Your Care: The role of philanthropy for children in care and care leaver*, p.8, 2017.

3. 미국

가.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보호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함
 - 「위탁보호 연계와 입양확대법」(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of 2008)에 의해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함
 - 동법 타이틀 II(Improving Outcomes for Children in Foster Care)에서 각 주정부는 보호종료 연령을 18세에서 21세까지 연장하되, 보호종료 연령을 각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미 연방정부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타이틀 IV-E를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보호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하는 주정부에게 보호기간 연장에 드는 비용을 재정상환(financial reimbursement)해주고 있음
 - 2018년 3월 1일 기준, 약 26개주와 콜롬비아 자치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제안을 수용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함⁵³⁾
 - 보호기간의 연장이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53)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NCSL, “Ready or Not”, <http://www.ncsl.org/bookstore/state-legislatures-magazine/states-prepare-kids-for-life-after-foster-care.aspx>(검색일: 2018.5.21.)

나. 자립지원 제도

- 「자립지원법」(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에 의해 양육 및 위탁시설 수용 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CFCIP)을 설계함
- 위탁시설에서 보호받는 18세 미만 아동과, 16세 이후 입양 및 친족의 보호를 받게 되어 위탁시설을 떠났거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위탁시설로부터 자립해야 하는 18-21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CFCIP 기금에 의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자립지원은 교육, 고용, 재정운영, 주거, 정서 지원 및 멘토 지정 등의 활동을 포함함
- 연방정부의 CFCIP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20%의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함

다. 주거지원

-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⁵⁴⁾
-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Public Housing and the Housing Choice Voucher)은 월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 정도에 이르는 금액만을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 공공주택기관(local public housing agencies)이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을 통해 주거지

54) Dion Robin et al, *Housing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pp.x, 10, 2014.

를 제공해 줌

- 16-21세의 홈리스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홈(group home), 모자보호시설(maternity group home), 가정숙박(host family home), 관리수반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s)가 최장 21개월까지 제공됨⁵⁵⁾
- 연속돌봄(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에 대해 주거·생활지원을 제공해 줌
 - 지역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 중심의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 Program, Shelter Plus Care Program,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홈리스 청소년에 중점을 두는 사업 설계가 가능함
- 가족결합 바우처 프로그램(Family Unification Voucher Program: FUP)을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함
 - 본래는 자녀를 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공공법」(Public Law)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18-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18개월 간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 이 경우에도 조정소득의 30%만을 월세로 지불하도록 설계함
 - 「주택개혁법」(Housing Opportunity Through Modernization Act(P.L. 114-201))이 2016년 7월에 시행됨으로써 FUP 바우처 사용연령을 21세에서 24세로 상향하고, 그 기간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5)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act Sheet”

<https://www.acf.hhs.gov/fysb/resource/tlp-fact-sheet>(검색일: 2018.7.26.)

라. 교육지원

- CFCIP 기금에 의한 프로그램 중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 (Educational and Training Vouchers Program: ETV)은 2002년에 신설됨
 - 2017년 기준 CFCIP와 ETV의 총 예산규모는 \$180,371,176(한화 약 1,921억6천7백만원)에 이룸
 -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종료 청소년은 ETV를 통해 미국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된 기관(공/사립 2~4년제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 ◆ 자격요건은 주정부 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로 연령 및 개인자산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함⁵⁶⁾
 - 연간 \$5,000까지의 지원금을 최장 5년 또는 23세에 이르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지원금 및 장학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함
- 연방정부의 ETV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20%의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함
- 연방정부의 TRIO Programs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을 지원함⁵⁷⁾
 - TRIO는 불리한 삶의 조건을 가진 청소년의 잠재성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 하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재능발굴(Talent Search), 학업보충(Upward Bound), 학생지원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s), 교육기회센터(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s), 맥네어 학점인정과정(McNair Postbaccalaureate)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법적근거는 200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The Higher Education Act:

56) ETV Program, <http://www.fc2sprograms.org/about-etv/>(검색일: 2018.7.26.)

5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Youth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Background and Federal Program*, p.21, 2017.

HEA)임

- TRIO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전/현 보호시설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됨
- 2017년도 연방정부는 TRIO프로그램에 \$9억(한화 약 9,636억원)을 지원함
- 2007년 「대학학비 감면 및 접근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H.S. 2669)의 개정으로 재정지원의 폭을 넓힘
- 연방법인 「대학학비 감면 및 접근법」의 ‘자립학생(independent student)⁵⁸⁾’의 정의에 13세 이상의 보호 청소년(youth in foster care)을 포함시켜 재정지원 대상이 되도록 함
-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대학진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워싱턴, 오레곤, 미네소타 등 20개 주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학비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등 8개 주는 학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⁵⁹⁾
 -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제출, 일정 수준의 수학 능력, 공립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조건 등이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됨
 - 주 정부별로 학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오와 및 미시간 주의 경

58) 재정지원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원 대상 학생을 일컫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Supporting Older Youth in Foster Care”,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supports-older-youth.aspx> (검색일: 2018.5.6.)

59)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50-State Review: Tuition Assistance Programs for Foster Youth Pursuing Postsecondary Education*, p.2, March 2017.

우는 학비 및 기타 비용, 기숙사 및 주거비용, 식대, 교통비, 도서구입비 및 개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

마. 취업지원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한편, 각 주정부 별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고용훈련 및 지원프로그램(Job Corps, YouthBuild, Youth Corps)이 운영되고 있음⁶⁰⁾
 - 노동부의 청소년 취업훈련 프로그램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Youth Activities 와 Job Corps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함
 -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Job Corps)은 청소년들의 상거래(trade)학습, 고졸학력인증(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보호시설 거주 중 혹은 보호종료 청소년 중 14세에서 2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함
- 2014년 WIA가 재승인됨에 따라, 「인력 혁신 및 기회법」(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이 WIA를 대체하였고, 대상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을 75%로 책정함
- 연방정부의 청소년 대상 고용지원 프로그램(Job Corps, National Guard

60) Urban Institute, *Supporting Youth Transitioning out of Foster Care, Issue Brief 3: Employment Programs*, pp.3-5, 2014.

Youth ChalleNGe, 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YouthBuild, Youth Corps)은 성인대상 고용 프로그램에 비해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수년에 이르고, 기술훈련, 학업지원, 상담, 인턴쉽, 숙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바. 건강지원

-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26세까지 메디케이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⁶¹⁾
-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은 2014년 1월1일 자로 26세 이하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메디케이드 적용에 포함시킴
- 부모명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26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 하에 시행됨

사. 자립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청소년 참여보장

(1) 평가

- 「보호아동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은 반드시 기금의 일정부분을 자립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은 시행 프로그램이 보호아동의 고용, 교육 및 개인 성장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산출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함
- 동법에 의해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CFCIP)의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주정부는 아동가족청(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주관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6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앞의 책, p.19, 2017.

- 전국 이행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를 구축함
-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주정부가 보호아동에게 제공한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추적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임
 - 성, 인종, 민족, 출생일 등 인구학적 정보와, 현재 상태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청소년들의 성과(outcome)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음⁶²⁾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데이터 수집의 형식 및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표준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특정 인구학적 정보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할 것
 - 다른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90% 이상 오류가 없도록 할 것(정보의 누락, 유효하지 않은 정보, 내부적으로 불일치한 답변 등에 주의할 것)
 - 보호아동의 성과(outcomes)를 조사하는 시점은 17세로, 그 이후 19세, 21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추적연구를 시행하도록 하며, 정보수집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기술할 것
 - ◆ 2011-2015년에 시행된 추적조사는 학업성취, 취업 및 학업상태, 고용상태, 성인과의 연계, 노숙경험비율, 메디케이드 제도 또는 기타 건강보험제도 이용률을 조사함⁶³⁾

62)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About NYTD”
<https://www.acf.hhs.gov/cb/resource/about-nytd?page=all>(검색일: 2018.5.24.)

63) 각 영역별 조사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아동가족청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NYTD Services and Outcomes Reports”,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추적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19세 혹은 21세에 이르게 된 보호종료 청소년들 중 최소 60%의 설문조사 답변 결과를 수집할 것
- 보호 중인 19세 혹은 21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80%의 설문 참여 결과를 수집할 것
- 주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그럼에도 자료제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각 보고서 제출기한에 따라 연간 지원금(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CFCIP))에 대한 1~5% 삭감조치를 취함⁶⁴⁾

(2) 참여보장

- CFCIP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보호종료 후 독립적 삶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⁶⁵⁾
- 이를 위해 주정부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연례 회의 개최 시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정부가 공식적인 청소년 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Board)를 설치하여 가정 외 보호서비스와 아동 복지시스템의 개선 논의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함⁶⁶⁾

<https://www.acf.hhs.gov/cb/resource/nytd-services-and-outcomes-reports>(검색일: 2018.5.11.)

64)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Children's Bureau, <https://www.acf.hhs.gov/cb/resource/about-nytd?page=3>(검색일: 2018.5.4.)

6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앞의 책, p.12, 2017.

4. 시사점

- 영국과 미국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완만한 이행기를 거쳐 독립적 성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합리적 부모가 또래의 자녀에게 제공해 주는 지원을 국가와 정부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준다는 목표 하에 독립과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 건강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정책 설계 및 시행의 기준이 ‘합리적인 부모라면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원과 지지를 보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단순한 시혜 차원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원과 지지 차원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보호종료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생계활동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자금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정부의 직접 지원 외에도 대학 규제 정책 등을 통해 대학이 보호종료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하는 프로

66) Judy Havlicek, Ching-Hsuan Lin, and Fabiola Villalpando, “Web Survey of Foster Youth Advisory Boards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60, p.109, 2016.

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기간의 훈련 및 교육기간, 숙소지원, 상담 및 학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주거안정이 고용 및 학업 지속의 필요조건인 바, 보호종료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거 바우처 제도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고 있음
- 보호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건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종료 청소년의 정서 및 심리적 안정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시설평가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평가를 통해 자립지원 제도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서비스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보호종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표 13]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 국가별 요약

구분	영국	미국	한국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 (up to 21) (주정부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요건 충족 시, 연장가능, 본인 요청 연장 불가)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 운영 개인 임대업자에게 임차 시 보증금 등 자산 보호책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 30%에 이르는 금액만을 월세로 지불 하도록 함) 18-24세 보호종료 청소년이 36개월간 바우처를 사용하여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 - 영구임대주택 지원 - 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 -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 제공 자립지원시설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기금의 우선지원 대상 교육과정 중 의류비, 도서구입비, 여비 및 점심 식대 등이 지원됨 경제적 사정(특히 생활비)으로 교육과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제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2-4년제 대학에서 최장 5년 또는 23세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저소득층 계층 자녀들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이 있음 주정부별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대학진학 및 학비면제, 생활비 지원 등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금 제도운영

<p>취업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장기간 훈련 프로그램 운영 (최장 3년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취업훈련 중 교통비 지급 • 면접에 필요한 의류비용,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장기간 훈련 및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 취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음
<p>건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건강방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여 보호종료 여성 청소년을 위한 방문지원프로그램 강화 • 일부지역(버밍엄)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보호종료 청소년을 25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세 이하의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메디케이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 수혜 가능

V.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1. 보호기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 보호기간 연장은 보호종료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해외 연구⁶⁷⁾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⁶⁸⁾,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 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난 이들은 노숙생활을 할 가능성이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1세까지로 연장만 해도 당사자들과 사회가 얻게 될 이익이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시설보호 기간의 연장이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됨
 - 시설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율과 높은 사회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⁶⁹⁾

67) Beauchamp, Toni, Principal Policy Officer Social Policy and Advocacy Team, Social Justice Unit Uniting Care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Young People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to Adulthood*, p.51, 2014.

68) Dworsky, Amy and Courtney Mark E, "The risk of teenage pregnancy among transitioning foster youth: Implications for extending state care beyond age 18",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2, p.1355, 2010.

69)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p.197, 2008.

- 교육 및 훈련, 취업준비 등 독립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양육자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간의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음⁷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지속이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고, 취업 때까지는 17.2%라고 답변하여, 적어도 대학교 졸업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9.6%에 이르고 있음⁷¹⁾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진학 및 취업, 장애 및 질병의 사유를 요건으로 함
-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시, 또는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정식 직업훈련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학대·방임 등으로 학업중단 시기가 있어 대학진학을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에는 보호연장 대상에서 제외됨

70)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및 미국이 21세로 보호종료 기간을 연장하였고, 2017년 4월 시행된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의무교육종료(15세)후 20세 미만까지 자립지원홈에 머물게 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보호종료기간을 22세까지 연장하고 있음

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p.260-1, 2015.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그 밖의 사유’로 연장하더라도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만이 가능함
- 진로변경(전문대에서 4년제 진학 또는 학과 변경)을 위한 휴학 및 자퇴, 생계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인한 휴학, 학교 및 기관지원에 의한 어학연수, 군입대 등이 곧 보호중지 및 보호종료 사유가 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의 개정으로 보호종결 아동·청소년의 보호종료 연령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 또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요청만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으로 대학자퇴 및 휴학, 실업 및 자발적 퇴직, 군입대 등을 보호중지 및 보호종료 사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자립지원의 표준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

가. 자립정착금 지급의 표준화

-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의결하며, 자립지원 정착금 차별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⁷²⁾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2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규정된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적정시기에 균등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72)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p.7, 2016.

- 매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지급을 이행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나. 자립지원체계의 구축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의무화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에 의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립지원관련 업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2018년 6월 기준, 9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미설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정보, 프로그램 제공의 지역적 편차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일정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를 개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데이터베이스 관리

-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자립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6년 실태조사』는 보호종료(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이후

(만 18세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 조사 1,134명, 오프라인 조사 175명, 총 1,309명이 참여하였고, 유효 데이터 1,221명의 답변을 분석하였음

- 지난 5년간 보호종료 청소년 12,844명 중 9.5%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⁷³⁾에서 사실상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6년 실태조사』는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락처 변경 등으로 접촉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꼽고 있었는데, 이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보호종료 이후의 경험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항시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기적인 조사(매 4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 집단에 대한 추적조사 내지는 종단연구(longitudinal analysis)를 수행해야 자립지원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7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호종료 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 4,996명, 공동생활가정 307명, 가정위탁 7,541명으로 모두 12,844명에 이룸.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34, 2016.

(3) 전담관리요원의 의무 배치

-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이후의 실태가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보호주체와 보호종료 청소년 간 연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대상자의 49%가 자신이 자립지원 대상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⁷⁴⁾
-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 관계, 즉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유지가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한다고 할 때⁷⁵⁾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30명 당 1명 배치되고, 100명 초과 시 1명이 추가되며,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시 배치되고 있는 현황⁷⁶⁾은 보호대상 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임
- 자립전담요원 의무배치는 물론, 영국에서 운영 중인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밀착 상담 및 진로지도, 정서적 유대감 고취를 통해 자립으로의 완만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음

3. LH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비 지원

- 2017년 기준, 25%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는 LH주거지원의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74)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74, 2016.

75) Hedin, Lena, “Support and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leaving care: A Swedish qualitative follow-up study of foster youth’s lived experiences”, *Qualitative Social Work*, Vol.16, No.4., p.502, 2017.

76)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45, 2016.

- 만23세 이하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주거형태 중 월세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바, 미국의 사례처럼 개인 임대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월세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방식, 영국의 사례처럼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주는 방안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학업지속 지원의 확충

-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의 최종 목표가 사회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구현하는 것이라 했을 때, 고등교육의 수혜는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경제 및 정서적 안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자질과 욕구가 있는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하고, 더 중요하게는 진학 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필요한 의류비 및 도서구입비 문구류 및 점심 식대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학비 외에 교통비, 식대, 개인생활비 등이 지원되기도 함
 - 보호종료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 제고는 물론,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5.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 취업관련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 영국 및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임
- 영국의 ‘청소년연계지원’사업 및 미국 노동부의 청소년 취업프로그램⁷⁷⁾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훈련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일시적인 취업연계나 단기 훈련과정이 아닌, 중·장기적 훈련을 통해 특정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임⁷⁸⁾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진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시, 충분한 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숙소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고려해야 함

6. 건강보험지원 프로그램 마련

- 보건복지부의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았던 보호종료 청소년 중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함⁷⁹⁾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건강지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

77) 동 보고서 p.32 참조.

78)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아동자립지원단장과의 전화면담(2018.5.30.)내용임.

79) 보건복지부, 『2016년 실태조사』, p.165, 2016.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결손처분, 의료수급권자 전환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 정신적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 중 원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고, 현재의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⁰⁾
- 우리나라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자립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및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⁸¹⁾

7.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청소년 참여 보장

- 자립지원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제1항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는 자립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시행여부와 프로그램 제공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80) 앞의 책, pp.178-179, 2016.

81) 같은 책, p.173, 2016.

- 미국이 2001-2010년의 기간에 실시한 보호시설 아동 프로그램(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의 다중 평가는 자립지원의 성과여부를 다음의 범주에서 평가한 바 있음⁸²⁾
 - 학업성취의 증가, 취업률의 제고와 안정성 확보, 대인관계 형성, 혼전 임신 및 출산의 감소, 약물남용 및 범죄연루의 감소
- 보호종료 청소년이 자신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후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로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82)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Chafee Independent Living Evaluation Project), 2001-2010 <https://www.acf.hhs.gov/opre/research/project/multi-site-evaluation-of-foster-youth-programs-chafee-independent-living>(검색일: 2018.5.29.)

VI. 결론

-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 교육·훈련·고용에 대한 기회부여, 경제적 안정성 획득, 주거안정 및 안전의 확보, 건강지원에 대한 접근,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해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을 검토하고, 이를 참고하여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입법과제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개정으로 보호종결 아동·청소년의 보호종료 연령을 21세로 일괄 상향시키는 방안, 또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요청만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진로변경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실업 및 자발적 퇴직, 군입대 등이 보호종지 내지는 보호종료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지역 및 대상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여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서비스제공 표준화 맥락에서 「아동복지법」 제40조를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립지원전담기구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상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2018년 8월 28일 정부발표 ‘2019 예산안’에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임대주택 240호 제공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은 최장 2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됨. 정부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개인 임대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나머지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넷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충함은 물론, 이미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업을 유지하고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다섯째,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진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 내용의 다양성 확충, 인턴십 기회 제공, 숙박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 의료수급권자 전환지원을 통한 건강지원책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곱째,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2016.
- 기획재정부, 『특색사업 100선』, 2018.
- 김미숙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예성, 이경상,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42호, 2015.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2008.
-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3호, 2017.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7.
- 보건복지부,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17.
-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2018.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4년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4.
- 이현주, 「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 유니버설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보건복지포럼』, 통권 226호, 201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 Beauchamp, Toni, Principal Policy Officer Social Policy and Advocacy Team, *Social Justice Unit Uniting Care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Young People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to Adulthood*, 2014.
- Judy Havlicek, Ching-Hsuan Lin, and Fabiola Villalpando, “Web Survey of Foster Youth Advisory Boards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60, 2016, pp.109-118.
- Barnardo’s and St. Basils, *Care Leavers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 2015.
- Cameron, Claire, *Leaving Care and Employment in Five European Countries: An*

Undocumented Problem? 2016.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Improving Mental Health Support for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Youth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Background and Federal Program*, 2017.

Department for Education, *Care Leavers' Transition to Adulthood*, Session 2015-16, July 2015.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3: planning transition to adulthood for care leavers*, 2015.

Department of Education, *Extending Personal Adviser support to all care leavers to age 25: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Feb 2018.

Dion, Robin, Amy Dworsky, Jackie Kauff, and Rebecca Kleinman, *Housing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2014.

Dworsky, Amy and Courtney Mark E, "The risk of teenage pregnancy among transitioning foster youth: Implications for extending state care beyond age 18",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2, Issue.10., 2010, pp.1351~1356.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50-State Review: Tuition Assistance Programs for Foster Youth Pursuing Postsecondary Education*, March 2017.

Hedin, Lena, "Support and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leaving care: A Swedish qualitative follow-up study of foster youth's lived experiences", *Qualitative Social Work*, Vol.16, No.4., 2017, pp.500-514.

HM Government, *Keep on Caring: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Care to Independence*, 2016.

House of Commons Library, *Foster care in England*, Debate Pack(CDP-0064), 12 March, 2018.

Mynarska et al., "Vulnerabil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Major risks,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amilies And Societies Working*

- Paper Series, 49, 2015, pp.1~105.
- Reilly, Thom, “Transition from Care: Status and Outcomes of Youth Who Age Out of Foster Care”, *Child Welfare*, Vol.82, No.6., 2003, pp.727-746.
- Sulimani-Aidan, Yafit, “Barriers and resources in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at-risk young adul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77, 2017, pp.147~152.
- Urban Institute, *Supporting Youth Transitioning out of Foster Care*, Issue Brief 3: Employment Programs, 2014.
- Wharton, Rachel, Plum Lomax and Rosanna Thomasoo, *In Your Care: The Role of Philanthropy for Children in Care and Care Leaver*, 2017.
- Zimmermann, Ann. “Social Vulnerability as an Analytical Perspective”, *Population Europe Discussion Paper*, No.4, 2017, pp.1~12.
-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최종 검색일: 2018.5.1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최종 검색일: 2018.5.18.)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최종 검색일: 2018.8.7.)
<<https://www.work.go.kr/pkg/young/index.do>>
-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최종 검색일: 2018.5.19.)
<http://125.60.43.169/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vw_cd=MT_ZTITLE&list_id=D3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국가통계포털,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최종 검색일: 2018.5.3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
- 국가통계포털, “연령 및 성별인구”,(최종 검색일: 2018.6.2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1603&vw_cd=MT_ZTITLE&list_id=A11_2016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시도별, 성별, 연령별”,(최종 검색일: 2018.6.2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최종 검색일: 2018. 4. 20.)<<https://www.adongcda.or.kr/>>
 연합뉴스, 「다 컸으니 나가라고요?...보육원 퇴소청소년 눈물」,
 2017년12월8일자,(최종 검색일: 2018.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166700797.HTML>>
- 한국일보, 「보육원 퇴소 후 거리로 내몰리는 ‘보호종료자」」, 2017년10월11일자,
 (최종 검색일: 2018.3.2.),
 <<http://www.hankookilbo.com/v/029861a88ab844ae8f970d2d0f23fc2c>>
-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About NYTD”(최종 검색일: 2018.5.24.)
 <<https://www.acf.hhs.gov/cb/resource/about-nytd?page=all>>
-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NYTD Services and Outcomes Reports”,(최종 검색일: 2018.5.11.)
 <<https://www.acf.hhs.gov/cb/resource/nytd-services-and-outcomes-reports>>
-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Chafee Independent Living Evaluation Project), 2001-2010,(최종 검색일: 2018.5.29.)
 <<https://www.acf.hhs.gov/opre/research/project/multi-site-evaluation-of-foster-youth-programs-chafee-independent-living>>
- ETV Program, “About ETV”,(최종 검색일: 2018.7.26.)
 <<http://www.fc2sprograms.org/about-etv/>>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NCSL, “Ready or Not”,(최종 검색일: 2018.5.21.)<<http://www.ncsl.org/bookstore/state-legislatures-magazine/state-s-prepare-kids-for-life-after-foster-care.aspx>>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Supporting Older Youth in Foster Care”,(최종 검색일: 2018.5.6.)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supports-older-youth.aspx>>
- OFFA, “How to prepare and submit your access agreement: step by step guide”,(최종 검색일: 2018.4.24.)
<<https://www.offa.org.uk/universities-and-colleges/prepare-submit-access-agreement-step-step-guide/>>
- Office for Fair Access,(최종 검색일: 2018.4.24.)<<https://www.offa.org.uk/>>
- Ofsted, “Children’s social care data in England 2017: main findings”,(최종 검색일: 2018.5.11.)<<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rens-social-care-data-in-england-2017/childrens-social-care-data-in-england-2017-main-findings#all-childrens-homes>>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Children’s Bureau,(최종 검색일: 2018.5.4.)
<<https://www.acf.hhs.gov/cb/resource/about-nytd?page=3>>
- UK Government, “bursary fund”,(최종 검색일: 2018.4.23.)
<<https://www.gov.uk/1619-bursary-fund>>
- UK Government, “Advice for young people: 16 to 19 Bursary Fund guide”, (최종 검색일: 2017.7.26.)
<<https://www.gov.uk/guidance/advice-for-young-people-16-to-19-bursary-fund-guide#finding-out-if-you-are-eligible-for-the-discretionary-bursary>>
- UK Government, “Jobcentre Plus”,(최종 검색일: 2018.5.31.)
<<https://www.gov.uk/jobcentre-plus-help-for-recruiters>>
- UK Government, “Statistics: looked-after children”,(최종 검색일: 2018.5.1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atistics-looked-after-children#outcomes-for-looked-after-children>>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act Sheet”,(최종 검색일: 2018.7.26.)
<<https://www.acf.hhs.gov/fysb/resource/tlp-fact-sheet>>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03.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05.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06.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06.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07.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주은 최진응

입법 · 정책보고서 Vol. 제8호

발 간 일 2018년 9월 21일
발 행 이 내 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0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610-14

□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정책보고서 제 8 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